

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5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5월 12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이재일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 제17조제1항 조문의 문맥을 매끄럽게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17조제1항의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”라는 조문을 문맥이 매끄럽게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”로 조문을 수정.

과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과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중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.”를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행	수정안
제17조(시설관리 및 손해배상)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.	제17조(시설관리 및 손해배상)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